

(화제의 뉴스)

1. 하도급 업체 선정에도 불구하고 재입찰 시도 부당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었음에도 낙찰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다시 입찰을 시도한 원도급자에 관계당국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원도급자)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는데도 곧바로 재입찰해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면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기사 :

▶ [대법, 원도급 건설사 최저가낙찰 하도급업체 재선정 관행 제동 - 파이낸셜뉴스 | 2012. 3. 2.](#)